

임직원퇴직금규정 일부 개정(안)

2017 . 5 . 2 .

문서번호	경영지원팀-9920	선임	팀장	본부장	대표이사		
결재일자	2017.05.08.	05/02 선정아	05/02 代김경아	05/04 박진배	05/08 이근		
공개여부	공개	협 조		선임			
방침번호	대표이사방침 제1756호		05/02 김경아				

추진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운영지침』(행정자치부 공기업과, 2016.05) - 『임금피크제 도입 및 운영계획(안)』(대표이사방침 제3846호, 2016.12.15.) -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대상자 연봉 조정 계획』(대표이사방침 제178호, 2017.01.19.)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51호, 2016.12.30.)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과-529, 2013.02.07.) 		
대 내 외 협력현황	부서(단체)명	협약내용	협약결과
사 업 비	해당없음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토여부 '✓' 표시
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	시 민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 해 당 사 자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 문 가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음 브 즈 만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법 령 및 기 타 고 려 사 항	법 령 규 정 : 교통 <input type="checkbox"/> 환경 <input type="checkbox"/> 재해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기 타 : 고용효과 <input type="checkbox"/> 노동인지 <input type="checkbox"/> 균형인지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 <input type="checkbox"/> 성인지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디자인 <input type="checkbox"/> 갈등발생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유지관리 비용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타 자 원 의 활 용	중 앙 부 처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민 간 단 체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 업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관 계 기 관 및 단 체 협 의	관 계 기 관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관 련 단 체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임직원퇴직금규정 일부 개정(안)

퇴직금 중간정산의 횟수가 1회로 제한됨에 따라 임금피크제 대상자 등 퇴직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직원의 중간정산이 불가능함.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발생 가능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1. 제안근거

- 『지방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운영지침』(행정자치부 공기업과, 2016.05)
- 『임금피크제 도입 및 운영계획(안)』(대표이사방침 제3846호, 2016.12.15.)
-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대상자 연봉 조정 계획』(대표이사방침 제178호, 2017.01.19.)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51호, 2016.12.30.)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과-529, 2013.02.07.)

2. 제안이유

- 임금피크제 도입
 -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연봉 조정에 따른 퇴직금 하향조정
 - 퇴직금이 매년 하향되거나 퇴직금 중간정산 횟수제한으로 인해 근로자 불이익 발생
- 상위법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항 개정
 - 상위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중간정산 사유에 따른 횟수제한보다 광범위하게 제한을 두어 근로자 불이익 발생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는 제2호에 한해 횟수 제한을 두고 있으나, 내부규정인 『임직원퇴직금규정』에는 모든 중간정산 사유에 횟수 제한을 둠.

3. 주요골자

- 퇴직금 중간정산의 횟수 제한 조항 삭제
 -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재직 중 1회로 제한하는 조항 삭제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등을 부담하는 경우만 1회로 한정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제한한 신설 조항에 명시
-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를 명시하는 조항 신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명시

4. 참고사항

- 관련근거 : 규정관리규정 제 12조
- 협의 :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및 공기업과 사전 협의
- 절차 : 서울시 사전협의 및 이사회 의결
- 기타 : 개정안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

【별지】

임직원퇴직금규정 일부 개정안

「임직원퇴직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제2항을 삭제한다.

○ 제7조 제3항을 신설한다.

③ 제①항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2017.05.00 신설 >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재직기간 중 1회로 한정)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05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퇴직금의 중간정산)</p> <p>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에 의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가산한다.</p> <p>② 퇴직금 중간정산은 재직 중 1회에 한한다.</p>	<p>제7조(퇴직금의 중간정산)</p> <p>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에 의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가산한다.</p> <p>②<2017.5.00 삭제></p> <p>③ 제①항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2017.05.00 신설 ></p> <p>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p> <p>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재직기간 중 1회로 한정)</p> <p>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p> <p>가. 근로자 본인</p> <p>나. 근로자의 배우자</p> <p>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p> <p>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라 파산선고</p>

임직원퇴직금규정

제정 2009.03.02.

개정 2017.05.00.

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보수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평균임금을 말한다.
2. “퇴직금”이라 함은 근속년수에 따라 본 규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일시불을 원칙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3. “특별공로금”이라 함은 퇴직하는 임직원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지급대상) ① 퇴직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지급한다.

1. 의원면직
2. 정년퇴직
3. 면 직
4. 임기만료 퇴직
5. 사 망

② 임직원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급기준) ① 퇴직금액의 산출은 평균임금에 <별표1>의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 지급한다.

② 임시직원이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때에는 재직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제6조(근속년수 계산) ① 근속년수의 계산은 임명된 날로부터 퇴직한 날까지 계산한다. 다만, 고용계약 직원으로서 고용계약기간 만료 후 재고용 될 때에는 계속년수로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1년 미만의 달수는 월할 계산하고, 월 미만은 일할 계산한다.

③ 직원의 휴직기간은 계속 근무년수로 산정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 불분명으로 휴직한 기간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7조(퇴직금의 중간정산) 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에 의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

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가산한다.

② <2017.05.00 삭제>

③ 제①항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2017.05.00 신설 >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재직기간 중 1회로 한정)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 가. 근로자 본인
 - 나. 근로자의 배우자
 -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퇴직급여의 지급제한) ① 임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감하여 지급한다.

1. 재직 중 금고이상의 형의 받을 때
2.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에 의한 파면을 할 때

② 형사재판이 계류 중에 있거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형이 확정될 때까지 퇴직금 지급을 보류한다.

제9조(퇴직금등의 수령권자) ① 퇴직금 및 특별공로금은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퇴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유족범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를 준용한다.

제10조(퇴직금의 지급기한) 퇴직금은 퇴직자가 퇴직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시 불로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3개월까지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특별공로금) ① 업무상 사망 또는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퇴직하는 임직원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특별공로금은 재단 인사위원회에서 지급범위를 결정하고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05. 00)

이 규정은 2017년 05월 00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퇴 직 금 지 급 률 표

구 분	지 급 기 준
임 직 원	근속년수 × 평균임금 × 30일

※ 붙임: 임직원퇴직금규정 개정(안) 1부. 끝.